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거나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에 동승하는 행위 등을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4조의2, 제148조의2제7항).
- 운전자의 운전면허·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변경·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7조제5항·제6항).
- 고용주등이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연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0조제3항).

II. 검토의견

1. 음주운전 방조의 단어 수정(안 제44조의2)

개정안 제44조의2는 음주운전을 하도록 운전자에게 자동차등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 제148조의2제7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음.¹⁾ 이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제3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²⁾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죄의 방조범과 형법상 방조범이 동일한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³⁾ 형법상 방조는 정범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정범에 의한 범익침해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작위에 의한 방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1) 안 제148조의2(벌칙) ① ~ ⑥ (생략)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 방해 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중범으로 규정하고 있고, 필수적 감경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 「형법」 제32조(중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중범으로 처벌한다.

②중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방조도 가능함.⁴⁾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행위를 한 사람이 독립된 정범이 되어 이를 방조한 자도 정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등 개정안의 방조범이 형법상 방조범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음주운전 방조죄의 취지를 유지하되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방조를 조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안 제44조2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u>방조</u>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u>방조</u>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행위 <u>조장</u> 금지)----- ----- ----- ----- ----- ----- <u>조장</u> -----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개정안과 같음)

4)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pp523-526

2. 가중 과태료 횡수 산정 기간의 명확화(안 제160조제3항 후단)

개정안 제160조제3항 후단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4개 행위를 연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⁵⁾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연 3회’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시점부터 1년 이내를 의미하는지 혹은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을 의미하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위반 횡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근거를 규정할 때에는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야 집행상 혼란이 없음.⁶⁾

이에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로 명확히 하는 수정의견을 경찰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5)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6)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2024, p608

[안 제160조제3항 후단에 대한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전단 생략). 이 경우 <u>시·도경찰청장은</u>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u>연 3회</u>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u>과태료를 고용주등에게</u> 부과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u>시·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u> ----- ----- ----- <u>3회</u> ----- ----- ----- ----- <u>과태료를</u> ----- ----- ④ (현행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최 기 도)